

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

◆ 재산세

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다.

▶ 납부기한

대 상	납부기한	납부방법	소관기관
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/2	7. 16. ~ 7. 31.	고지납부	시청·군청·구청
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/2	9. 16. ~ 9. 30.		

※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다.

▶ 과세표준

구 분	과세대상	시가표준액	재산세과표
주택분	주택과 부속토지	주택공시가격	시가표준액×공정시장가액비율
건물분	일반건물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시가표준액×공정시장가액비율
토지분	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	개별공시지가	시가표준액×공정시장가액비율

※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

※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

* 세 율 : '세율표' 참조

지방교육세

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된다.

▶ 과세표준 및 세율

과 세 표 준	세 율
과세특례분 제외한 재산세액	20%

재산세 과세특례

중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되며 과세표준·세율 등은 도시계획세와 동일하다.

* 과세표준 : 재산세 과세표준액

* 세 율 : 0.14%

지역자원시설세

중전 공동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병기 부과되며, 과세표준·세율 등은 공동시설세와 동일하다.

* 과세표준 : 건축물 시간표준액(주택의 건축물부분×공정시장가액비율)

* 세 율 : 세율표 참조

<재산세 ·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표>

구분	과세대상	과세표준	세율	비고
재 산 세	주택	6천만원 이하	0.1%	별장 4%
		1억5천만원 이하	6만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
		3억원 이하	19만5천원+1.5억원 초과금액의 0.25%	
		3억원 초과	57만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
	건축물	골프장, 고급오락장	4%	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·증설 (5년간 1.25%)
		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	0.5%	
		기타건축물	0.25%	
	나대지 등 (종합합산 과세)	5천만원 이하	0.2%	
		1억원 이하	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	
		1억원 초과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	
	사업용토지 (별도합산 과세)	2억원 이하	0.2%	
		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0.3%	
		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	
	기타토지 (분리과세)	전·답·과수원· 목장용지 및 임야	0.07%	
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		4%		
위 이외의 토지		0.2%		
지 역 자 원 시 설 세	건축물	600만원 이하	0.04%	화재 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 증과세
		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	
		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	
		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	
		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0%	
		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	